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최정순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조례에는 정수처분 후 체납금을 완납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적 약자는 체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,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수수료를 미부과하는 추세에 따라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

심리적 압박감 및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수용가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도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며,

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